

개정 의장심사기준에 의한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의 출원 요령]

I. 화상디자인 보호제도의 도입취지

최근 Information Technology(IT=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는 제품이 시장에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사용자와 정보통신기기와 의 중요한 Interface부분인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독창적이고 특징있는 도형 등이 표시되는 디자인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출원이 부분의장제도의 활용을 통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GUI 및 Icon 등의 창작에도 유체물품의 디자인 창작에 못지 않은 나름대로의 창작자의 지적 노력과 자금·시간이 소요되므로 제3자가 어떤 노력이나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 ride)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보호는 창작적 가치 및 투자된 자본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물품혼동방지라는 기존의 의장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을 의장의 구성요소인 模樣으로 취급하여 보호함으로써, GUI 및 Icon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의장의 창작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의장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3. 7.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 등록 출원요령을 마련하였다.

II.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한 화상디자인의 요건

1.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상에 구현되어 있을 것

개정 의장심사기준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장심사기준 제3조제1호다목)

따라서 의장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 등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의장법상의 의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의 전체의장의 예 A》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의 부분의장의 예 B》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의장의 설명 :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2. 형태적 일체성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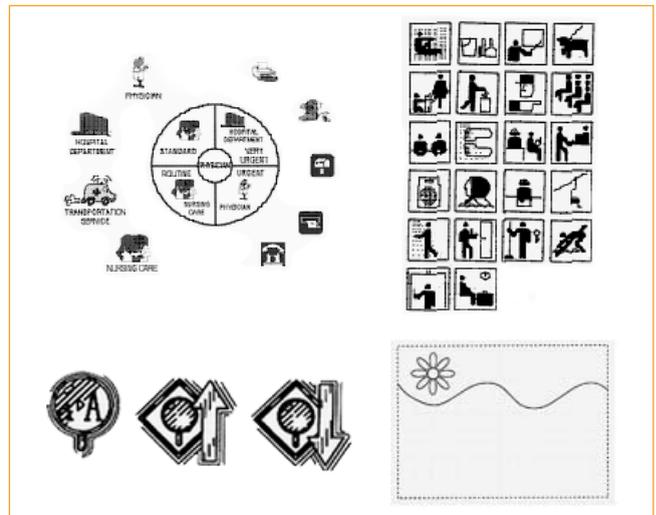
의장심사기준은 부분의장등록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의장이 표현된 경우에는 1의장 1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형태적 일체성 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의장창작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장심사기준 제12조제1항제5호 참조)

따라서 Icon set 등 표시화면에 표시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도형은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1의장으로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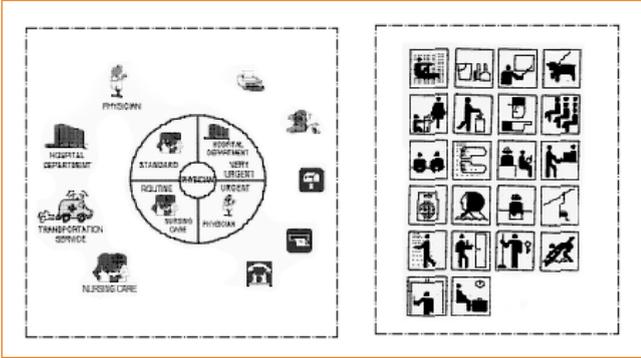
또한 부분의장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선을 1점쇄선(- · - · -)으로 도시하여야 하므로, Icon set 등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디자인의 경계부분을 1점쇄선으로 도시하여야 한다.

(1)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의장(모양)을 포함하고 있고, 형태적 일체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1의장 1출원 원칙에 위반된 사례들이다. (이하 필요시 화상디자인만을 분리·표현하여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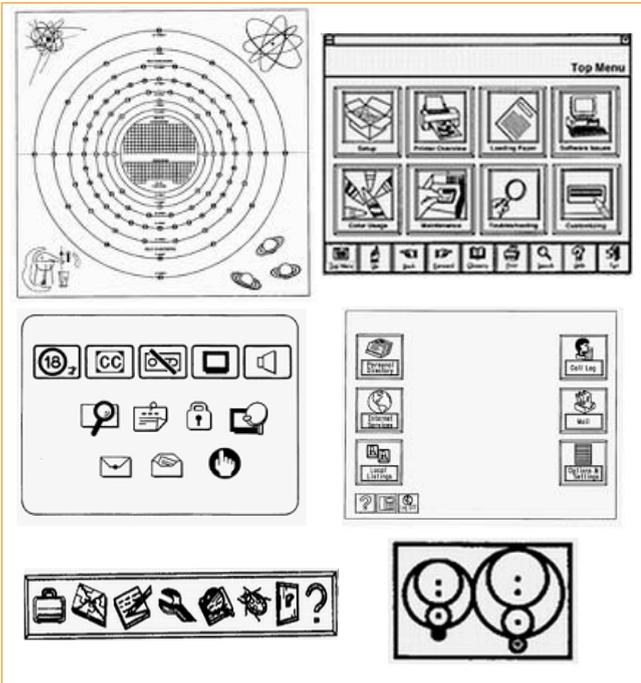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2이상의 부분의장(모양)의 경계선을 실선 또는 1점쇄선으로 도시하는 경우에는 1의장으로 인정된다.



(2)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처럼 등록하고자 하는 부분(화상디자인)의 경계를 실선이나 1점쇄선(---)으로 명확히 도시한 경우에는 1의장 1출원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실선이나 1점쇄선으로 구분한 부분 전체가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되어 1의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만일 다수의 아이콘으로 구성된 화상디자인을 1의장으로 등록받는 경우 각각의 구성 아이콘은 보호되지 않으므로, 특정한 개개의 아이콘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각 1의장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3. 동적 의장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의장이 변화하는 경우(동적 의장)라 함은, 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그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해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변화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 i) 표시되는 도형 그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
- ii) 표시되는 도형 등의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상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화상디자

인이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일정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당해 화상디자인의 변화 전후의 도형에 [형태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원서의 [의장의 설명]란에 변화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서의 기재 및 출원서에 첨부한 사시도와 6면도만으로는 그 변화 전후의 도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시도와 6면도 이외에 변화 전후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참고도면(변화후의 정면도 1, 변화후의 정면도 2, ... 순)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상디자인의 변화에 형태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면 표시화면상에 표시되는 특정 도형(아이콘)의 선택에 의해 당해 표시도형이 아래와 같이 변화하는 경우, 그 변화에 일정성이 인정되고 변화 전후의 도형도 형태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그 외의 도면은 생략하며 도면중에 표시되어 있는 화상표는 설명용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참고도의 도면작성은 위와 같이 할 수 없으며 첨부된 출원서 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화상디자인(Website GUI)이 변화하는 경우도 그 변화의 일정성이 인정되고 변화 전후의 도형에 형태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화상디자인의 변화에 형태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화상디자인의 변화가 일정한 것이라도 그 변화 전후의 도형에 상호 형태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하나의 의장에 관한 의장 등록출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표시화면에 표시되는 특정 도형(아이콘)의 선택에 의하여 별도의 표시화면으로 바뀌는 경우, 이 변화 전후의 표시화면에 관해서는 형태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하나의 의장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변화 전후의 표시화면 각각에 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화되는 표시화면의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의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그 외의 도면은 생략하며 도면중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는 설명용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참고도의 도면작성은 위와 같이 할 수 없으며 첨부된 출원서 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

의장법상 의장의 구성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 i) 특허청 홈페이지, 인천공항 홈페이지 등의 Web Site GUI
- ii) 한글프로그램, Windows Media Player 등 응용프로그램의 S/W GUI
- iii) 휴대전화기, PDA, Web Pad 등에 구현되는 Mobile GUI
- iv) Navigator, 냉장고, MP3, CDP, 디지털 TV 등에 구현되는 정보가전 GUI

(2) 아이콘(Icon)

- i) 한글아이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등의 Application Icon
- ii) 단품이나 Set로서의 도구 Icon
- iii)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Icon

(3) 그래픽 이미지 (Graphic Images)

- i) Contents로서의 그래픽
- ii)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
- iii) 캐릭터
- iv) 아바타를 구성하는 아이템 set
- v) 이모티콘
- vi) 3D 애니메이션
- vii) 각종 기능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 (배터리 잔량표시, 수신상태표시, 각종 레벨게이지 표시) 등

IV.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할 수 있는 물품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의장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출원가능한 물품에는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자동차용자동항법장치(Navigator), 냉장고, 세

탁기, 전자레인지, 복사기, 정수기, MP3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MD 플레이어, 워크맨,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텔레비전, 자동예금인출예입장치(ATM), POS(Point of Sale) 단말기 등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가 포함된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만은 의장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① 의장법규상 인정되는 물품의 명칭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전화기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

② 의장법규상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명칭

- 아이콘, 컴퓨터 아이콘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등

V.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의 이점

(1) 물품의 부분에 관한 의장에 대해서는 의장의 성립요건 중 물품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그 동안 보호되지 못하였으나,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부분의장의 도입으로 인한 권리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1. 7. 1.부터는 부분의장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상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과 결합하여 전체의장 또는 부분의장으로 출원하여야 하며, 화상디자인에 관하여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2)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을 전체의장으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의장권이 있는 전체의장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유사한 의장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만 의장권의 침해가 인정되므로, 등록의장의 일부분을 도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침해는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을 부분의장으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부분의장으로 등록받은 의장을 타인이 전체의장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컴퓨터 모니터 등 물품의 신규한 형상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을 전체의장으로 출원하는 것보다 부분의장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 화상디자인의 의장등록출원 요령

본 출원요령은 정보통신기기 등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를 가지는 물품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部分意匠의 의장등록출원을 중심으로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의 취급을 설명한다. 출원서 및 도면 작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기타 부분의장의 출원요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분의장 및 한 벌 물품 의장의 출원 요령"(특허청, 2001.7) 참고)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실선부분)안에 화상디자인이 포함되는 경우의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부분의장의 의장등록출원과 동일하다.

1. 도면의 작성 요령

화상디자인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의장의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당해 도형 등이 통전(通電) 등에 의하여 표시되고 있는 상태를 사시도 및 6면도에 기재하여야 한다.

당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의장 중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부분에 관한 형상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즉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컴퓨터 화면의 일부가 실선으로 묘사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기의 형상을 파선으로 묘사하여 화상디자인의 배경을 나타내고, 그 파선내에서 실선으로 화상디자인을 표시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또한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 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을 1점쇄선(- · - · -)으로 도시하여야 한다.

2.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정보화기기이므로 현행의 입체의장의 경우와 같이 사시도와 6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시도는 사투상도법·등각투상도법·부등각투상도법·투시도법 중 어느 도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6면도는 정투상도법에 의한 도면이어야 한다.

즉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정면의 일부분(ex. 휴대전화기의 액정표시부 등)만을 부분의장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실선과 파선으로 도시된 사시도 및 6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기의 액정표시부에 관한 부분의장의 출원인 경우 배면에서는 부분의장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Mobile GUI)이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휴대전화기의 배면의 형상을 파선으로 도시한 배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사시도와 6면도만으로 부분의장을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대도·사용상태도·참고도 등 부가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의장의 설명'란 및 '의장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

화상디자인을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설명'란에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장창작내용의 요점'란에서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 창작의 특징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은, 심사·심판의 신속화나 의장공보에 게재되어 제3자에게 등록의장의 창작에 관한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의장의 설명'란 및 '의장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의장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3. 1점쇄선은 부분의장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과의 경계만을 나타내는 선임

【의장창작내용의 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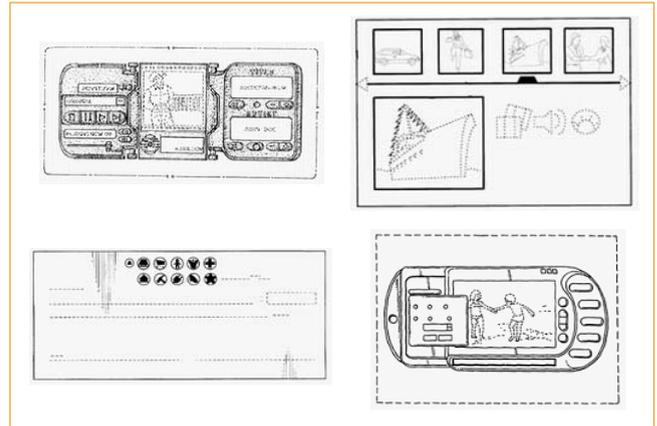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의장은 의장의 대상인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000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실행 아이콘으로서, 000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인 도안을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4.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액정 등 표시부 안에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 그 도형 등이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도형 등의 위치, 크기,

범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선(破線) 등에 의해 사시도 및 6면도에 표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화상디자인들은 전체로서 하나의 모양으로 1의장 1출원 원칙을 충족시키는 사례 중, 전체 모양 중 부분의장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claim)은 실선으로,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disclaim)은 파선으로 도시한 사례들이다.



5.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로서 사시도 및 6면도만으로는 표시된 도형 등이 화상디자인인지 아니면 인쇄된 도형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비통전(非通電)시의 상태도]나 [인쇄된 도형 등만을 표시한 참고도] 등에 의하여 당해 인쇄된 도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의장의 출원서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의장심사등록출원서

【수신처】 특허청장

【참조번호】 01

【제출일자】 2003. 07. 01.

【출원인】

【성명】 홍길동

【출원인코드】 4-2001-000056-1

【부분의장 여부】 부분의장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단독의장, 유사의장 여부】 단독의장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Kil Dong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우편번호】 302-701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국적】 KR

【취지】 의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원합니다.

출원인 홍길동 (인)

【수수료】

【출원료】 70,000 원

【합계】 70,000 원

【감면사유】 개인

【감면후 수수료】 21,000 원

【첨부서류】 1. 도면 1통

2. 기타 법령이 정한 증명서류 1통(필요시)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의장의 도면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서식]

【입체의장 도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의장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의장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의장은 의장의 대상인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실행 아이콘으로서, 별 막대와 전구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인 도안을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의장의 도면 견본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호서식]

【입체의장 도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의장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제임
2.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의장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의장은 의장의 대상인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S/W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로서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인 도안을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Ⅷ. 화상디자인 관련 의장심사기준 (2003. 7. 1. 시행)

제3조 제1호 (공업상 이용가능성)

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 취급한다.

제4조 제4항 (공지·공용의 의장)

하.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의장의 유사여부는 동일·유사물품간에 있어서만 판단한다.

(2)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의장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제13조 제2호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자.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 다만,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의장의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물품의 명칭은 예외로 한다.

(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가 표시된 휴대전화기 아이폰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 

[『의장심사기준』 개정(안) 개요]

1. 개정이유

- 문자 및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보호함으로써 문자를 응용한 의장, 아이콘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의장의 창작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골자

가.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는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 (안 제3조제3호 사목)

나.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을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 취급 (안 제3조제1호 다목 신설)

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을 신설 (안 제4조제4항 하목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없음

나. 규제심사 : 본 심사기준은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함

특허청훈령 제 호

의장심사기준중개정령안

의장심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 취급한다.

제3조 제3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도형 내에 중심선·기선·수평선·음영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 또는 농담,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부호 또는 문자 그 밖의 의장을 구성하지 않는 선·부호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한 것. 단,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1)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는 (2)에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의장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취급한다.

(2)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 중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양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단, 도형 중에 표시되어 있어도 삭제될 요하지 않는다

(예) ①신문, 서적의 문장부분

②성분표시, 사용설명 등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

제4조 제4항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의장의 유사여부는 동일·유사물품간에 있어서만 판단한다.

(2)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의장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제13조 제2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 다만,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의장의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물품의 명칭은 예외로 한다.

(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가 표시된 휴대전화기, 아이콘이 표시된 개인 휴대정보단말기(PDA) 등.

부 칙

이 기준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불가능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의장(의장심사등록출원된 의장 및 의장무심사등록출원된 의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이라 함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물품이 양산가능한 것을 말한다 가.~나. (생략) <신설></p> <p>2. (생략)</p> <p>3. 의장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의장은 다음과 같다. 가.~바. (생략) 사. 도면중에 음영, 지시선, 기 타 의장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선, 부호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한 것.</p> <p>(1) 문자 또는 정보전달만을 위한 표지는 모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삭제하게 한다. 다만, 물품의 사용상 불가결한 것과 물품의 일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상표나 상호 또는 문자, 기타 정보전달만을 위한 표지로서 의장의 미감에 영향이 없는 것은 삭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와 같이 상표나 상호 또는 문자, 기타 정보전달만을 위한 표지를 의장에 표시할 경우에는 『의장의 설명』란에 『OO도의 OO부분에 표시된 OO문자는 의장등록의 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p> <p>(예) ① 사용상 불가결한 것 ○ 계기의 눈금으로 쓰여진 문자 ○ 특정의 물품에 반드시 쓰여지는 문자(포장용상자의[up],[down] 표시 등) ② 상표, 상호, 문자, 기타 정보전달만을 위한 표지가 쓰여지는 예 ○ TV의 전면구석에 작은 문자로 상표나 상호를 기입한 경우 ○ 전기용품의 구석에 작은 문자로 [이 기기는 110V 및 220V겸용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교통표지판의 [주차금지표지(문자제외)]등</p> <p>(2) 의장을 구성하지 않는 선·부호·문자·표지 등은 동 의장의 바탕색(바탕에 모양이 있는 경우는 문자가 없었다면 표시되었을 것으로 관념되는 모양 및 색채)으로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색으로 삭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각형 또는 문자형태에 가까운 도형 등으로 삭제되어 전체적으로 미감에 영향이 없고 전체 의장에 대한 삭제모양의 비중이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장을 구성하는 모양으로 인정한다. (가) 연속모양의 모티브(motif)로 쓰여진 문자 (나) 장식되어 있는 문자 ○ 통상의 방법으로는 일견하여 특정문자로 인식하기 곤란한 정도로 장식된 것</p> <p>제4조(공지·공용의 의장) ①~③(생략) ④법 제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의장의 유사여부는 다음 기준을 참작하여 심사례, 심결례 및 판례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가.~파. (생략) <신설></p> <p>제13조(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동 기준에 위반될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p> <p>1. (생략) 2.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명칭은 정당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아. (생략) 자. 형상, 모양, 색체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p> <p>차.~카.(생략)</p>	<p>제3조(공업상 이용가능성) ----- ----- -----</p> <p>1. ----- ----- -----</p> <p>가.~나. (현행과 같음) 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 취급한다.</p> <p>2. (현행과 같음) 3. ----- -----</p> <p>가.~바. (현행과 같음) 사. 도형 내에 중심선·기선·수평선·음영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 또는 농담,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부호 또는 문자 그 밖의 의장을 구성하지 않는 선·부호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한 것. 단,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p> <p>(1)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는 (2)에 기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의장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취급한다.</p> <p>(2) 물품에 표시된 문자, 표지 중 오로지 정보전달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양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단, 도형 중에 표시되어 있어도 삭제를 요하지 않는다 (예) ①신문, 서적의 문장부분 ②성분표시, 사용설명 등을 보통의 형태로 나타낸 문자.</p> <p>(3) 삭제</p> <p>제4조(공지·공용의 의장) ①~③(현행과 같음) ④ ----- ----- -----</p> <p>가.~파. (생략) 하.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의장의 유사여부는 동일·유사물품간에 있어서만 판단한다. (2) 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의장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p> <p>제13조(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 ----- -----</p> <p>1. (현행과 같음) 2. ----- -----</p> <p>가.~아. (현행과 같음) 자. 형상, 모양, 색체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 다만,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의장의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물품의 명칭은 예외로 한다. (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GUI)가 표시된 휴대전화기, 아이콘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등</p> <p>차.~카. (현행과 같음)</p>